

동두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2. 11. 21 동두천시장이 제출

나. 회부일자 : 2002. 11. 25

다. 상정일자 : 제123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제6차 본회의 토론

제7차 본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조성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고 일부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기금조성 목표액 “5억원”을 “10억원”으로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체육발전과 지역주민에게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억원씩 출연하여 2002년 현재 기금 5억원을 조성하였으나 10억원으로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민체육시설 확충을 비롯한 체육진흥발전을 위한 연구, 우수체육인 양성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